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3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5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
- 2006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·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규정에 부합된 조문을 정비·보완하고 고액·상습 체납자(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, 체납액 1억원 이상)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(안 제14조의 4)
 - 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
-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함 (안 제21조)
 -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, 적절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,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개정 필요
-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소액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문 신설 필요(안 제21조의 3)
-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을 50%에서 토지 및 건물은 2006년부터 매년 5%씩 인상

하여 2015년에 100%, 주택은 2008년부터 매년 5%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0% 적용 (안 부칙 제2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3조 및 동법 제69조의 2
 - 서울특별시 세제과 - 1325(2006. 2. 7) 구세 조례 개정표준안 공문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본 조례안은 2005.12.31 개정된 지방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문이 신설되거나 정비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안 제21조제1항 “토지·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” 는
-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건축물은 동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고 있는 바,
- 본 안과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“법 제111조제2항제1호로만 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이 없게 될 것이므로
- 안 제21조제1항 중 “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” 는 “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” 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,
- 부칙 안 제1조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법률 조항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호와 동법 제187조 및 부칙 제5조를 동법 부칙 제7843호(2005.12.31) 제1조 (시행일)에 의거 2006.1.1부터 시행하여야 함에도
- 본 부칙안과 같이 “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로 할 경우 지방세법과 조례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점이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
- 본 조례안 제21조제1항과 부칙안 제2조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단서로, “단,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” 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로만 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이 없게 되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적용

- 부칙안이 "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"로 할 경우 지방세법과 조례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시점이 상이하여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21조제1항 중 “법 제111조제2항제1호” 를 “법 제11조제2항” 으로 수정
- 부칙 제1조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” 로 수정

5. 審査結果：修正案 可決